

## 보도참고자료

**h·well**  
국민건강보험

보도일시
배포즉시
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요양급여실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장   | 이경섭   | 033)736-3802 | 배 포 일 | 2020. 11. 26.(목) [총 4매]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팀장   | 박정연   | 033)736-3820 | 배포부서  | 국민소통실                   | 부장 송상호 팀장 최재우<br>033)736-1405, 1430 |

**“통합재가 서비스” ,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**  
**…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로 고위험의 어르신 보호**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'19.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'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'을 실시하고 있다.
-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간호사·사회복지사·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.
  - 주야간보호통합형 [주·야간보호+방문요양(목욕)]과 가정방문통합형 [방문요양(목욕)+방문간호]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,
  -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(사례관리)하고,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.
- 통합재가 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.

□ 다음은 통합재가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의 사례이다.

| 수급자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 및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본정보) 83세, 농어촌, 독거</li> <li>○ (기저질환) 우측 하지 절단, 고혈압, 당뇨, 관절염 등</li> <li>○ (신체기능) 평소 앉아서 이동, 잦은낙상</li> <li>○ (인지·정서) 인지 양호, 우울감 호소</li> <li>○ (생활환경) 집안 위생 양호, 욕조 없음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(방문간호) 월 4회, 만성질환 점검, 약물복용 등 건강개방관리 및 응급환자 신속 대처 가능</li> <li>→ (방문요양) 월 17회, 일상생활, 가사 및 정서지원 등 안전한 재가 생활 및 가족수발 부담완화</li> <li>→ (차량목욕) 월 2회 차량 방문목욕으로 신체청결 유지 및 피부질환 관리</li> </ul> |

- 이처럼 통합재가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하여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,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하고,
  -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 자원(장애인콜택시)을 연계하여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.
- 공단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,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며,
- “통합재가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

## 붙임

##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

## ■ 사업 개요

- (기간) '20. 1. 1. ~ 본 사업 시행 전
- (모형) 2019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과 동일
- (기준)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지침
- (비용) 장기요양급여비용 활용
- (대상) 1~5등급 수급자 ... 의료급여, 국민기초, 타 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제외
- (기관선정) 동일 기관기호로 유형별 재가급여를 운영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참여 가능. 단, 최근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(신청기간) 매월 15일까지 수시 접수 후 20일까지 선정 통보
- (급여모형)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(분) 이상 제공 시 월정액 지급
- (간호기능 강화) 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발 시 주의사항\*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·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
\* 개개인의 질병에 따른 케어 시 참고사항,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
- (서비스 질제고) 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통합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수행

## ■ 세부 모형

## 1 주야간보호통합형

## ○ 인력배치기준

- 주야간보호 정원 10명 이상이면서, 수급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\* 배치  
\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, 조리원, 보조원(운전사)
- 방문요양 사회복지사, 주야간보호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

- 주야간보호 30:1 간호인력\* 추가배치 (1/2 이상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)  
\* 간호인력 : 간호(조무)사, 작업(물리)치료사

## ○ 급여제공기준

- 주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필수 제공
-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(분) 이상 제공

## &lt; 주야간보호통합형 서비스 기준 &gt;

| 분 류       |          | 급여제공 기준일수(일) |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(분)*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주·야간보호통합형 | 장기요양 1등급 | 24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22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21           | 18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20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18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|

\* 해당 월 제공된 방문요양 제공시간의 합 ÷ 해당 월 방문요양 총 제공일수

## 2 가정방문통합형

## ○ 인력배치기준

-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
- 방문간호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

## ○ 급여제공기준

-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제공
-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(분) 이상 제공

## &lt; 가정방문통합형 서비스 기준 &gt;

| 분 류     |          | 급여제공 기준일수(일) |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(분)*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가정방문통합형 | 장기요양 1등급 | 27           | 220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장기요양 2등급 | 25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장기요양 3등급 | 24           | 180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장기요양 4등급 | 23           | 160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장기요양 5등급 | 22           | 150               |

\* 해당 월 제공된 방문요양 제공시간의 합 ÷ 해당 월 방문요양 총 제공일수